

##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7. 9.(목) 15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송도균 부위원장  
이경자 위 원  
이병기 위 원  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 - 가. 성원보고
  - 나. 국민의례
  - 다. 개회선언
 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**바. 의결사항**

**1) 전파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(2009-30-142)**

-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전파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'을 원안대로 의결하고, 이후 규제개혁위원회·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제외한 자구, 체계 및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.
- 주요 내용
  - 초소형지구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(안 제19조제1항 4호)
  - 허가받은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 승계 근거 마련(안 제58조제3항)
  -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한 정기검사 연기 및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(안 제24조제6항, 안 제67조제1항제7호)

**2)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(2009-30-143)**

- 김준상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'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'을 원안대로 의결함.

<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 >

분야	성명	성별	전·현직
위원장	이경자	여	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
방송학계	박은희	여	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	이수영	여	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	하주용	남	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
경영·회계	홍철규	남	중앙대 경영학부 교수
법조계	최우석	남	최우석 법률사무소 변호사
시청자	최수경	여	서울 YWCA 사무총장

**3)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 처리방안에 관한 건 (2009-30-144)**

- 곽진희 의안조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의거 일상적·반복적 안건에 대한 '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 처리방안에 관한 건'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(서면결의 대상) ① 방송사업자·IPTV사업자 PP등록(변경등록포함) ② SO사업자시설 변경허가 ③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 ④ 방송사업자·IPTV사업자이용요금승인 ⑤ 방송사업자·IPTV사업자의국방송 재송신 승인 ⑥ 전광판방송사업 등록(변경등록포함)
  - (의사일정 공표 등) 사전에 서면결의 의사일정을 별도 공표하고 의결한 후 서면결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며, 차기회의에서 서면결의 결과를 보고

**4)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관한 건**  
(2009-30-141)

- 전차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재상정된, 「방송법」 제14조제1항(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관련)을 위반하고 그 시정명령을 3회 불이행한 (주)쌍용 및 그 대표자, 대구문화방송(주)에 대하여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고, '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 제재 조치에 관한 건'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.
- 제재 조치 내용
  - (주)쌍용 및 (주)쌍용의 전 대표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
  - 대구문화방송(주)에 대하여 「방송법」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3개월 간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의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광고 송출업무 정지(토막·자막·시보광고는 허용)를 명하고, 시행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
- ※ 방송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'과징금 1억 처분'하자는 소수의견 있음.

**5) (주)KT의 SKT(주)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 신청 처리방안에 관한 건**  
(2009-30-145)

-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40조의3(분쟁의 알선)에 의거 '(주)KT의 SKT(주)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 신청 처리방안'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신청인 (주)KT의 피신청인 SK텔레콤(주)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 이행에 관한 재정 사건(사건번호 : 200904재정013협정이행)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선 조정
  - 알선분과위원회는 이용자보호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**6) (주)이토마토-(주)아름방송네트워크 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** (2009-30-146)  
----- (비공개)

**사. 보고사항**

**1) 손실보상금 산정기준·절차 및 이자율 등 고시제정(안)에 관한 사항**

- 박윤현 전과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전과법」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주과수 회수·재배치 시행시 시설자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'손실보상금 산정기준·절차 및 이자율 등 고시제정(안)에 관한 사항'을 원안대로 접수함.

○ 주요 고시제정(안) 내용

- (손실보상 산정기준) 기존시설에 대한 잔존가액, 철거비용, 이전비용, 이자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(안 제3조)
- (보상협의회) 손실보상 대상설비 확인, 감정평가사 선정·방법 등을 시설자와 협의 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구성(안 제4조 내지 제6조)
  - ※ (구성) 시설자등, 소속 공무원, 방통위가 지정하는 전문기관 직원, 교수, 변호사, 감정평가사 등
- (감정평가사선정) 손실대상설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 방법(안 제7조)
  - ※ (선정방법) 방통위 2인, 시설자등이 요청하여 추천하는 경우 1인
- (보상심의위원회)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, 시설자 의견 청취, 이의 신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8조)
  - ※ (구성)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, 변호사·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, 전파 및 손실보상 관련 단체 임원 등
- (의견청취)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전 시설자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 기회 부여(안 제9조)
- (이의신청)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시설자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금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재선정 절차 마련(안 제11조)
- (보상금지급) 주과수 재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. 7. 22.(수) 10:00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6:55)

- ※ 형태근 위원은 16:10부터 참석 <의안 1), 5), 6)번 불참>